

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80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8. 22.

최두임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9. 10.

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김향숙 의원)

가. 개정이유

-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,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사생활 보장」 조항을 신설하고, 이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,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(안 제7조 신설)
- 2)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한 기존 「당직 및 비상근무」 조항의 조문 번호 조정 (안 제7조의2 조정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

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39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2.(금) ~ 8. 28.(목)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래훈)

-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,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과도한 업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사생활 보장」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 번호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개정내용
 - 사생활 보장 규정 신설(안 제7조)
 - 조문 체계 정비(안 제7조의2)
- 적정성 및 타당성
 - 상위법과 적법성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는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함.
 - 제도의 필요성: 최근 공무원 복무환경 변화와 근무시간 외 연락으로 인한 업무부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, 휴식권 보장 규정 마련은 시의성이 높음.
 - 공무원 권익 보호: 근무시간 외 사적 시간 침해를 방지하고, 일·생활 균형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 - 강행규정 여부: 해당 규정은 의무보다는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음.
- 종합검토 의견
 -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, 최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며 법적 근거도 명확함. 또한 행정 운영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, 규정의 실효성도 적절히 확보하고 있어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나 조례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